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조례를 보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개정 :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8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상위 법령 관련 상세조항 추가 및 삭제

- 현행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조문 정비

- 현행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 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정부의”를 “국비·도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조례의 규정”을 “다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 제목 “(준용)”을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을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로, “정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중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 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 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 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 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삭 제>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 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 9. (생략)	제3조(세입) ① 구미시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 1. ~ 9. (현행과 같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 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 항-----
11.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 국비·도비 ----- -----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12. 그 밖에 ----- 다른 조례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 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 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 ----- -----.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 야 한다.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 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 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 행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3조-----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9. 그 밖에 -----

위한 사업 ② (생략) 제5조(잉여금 처리) <u>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u> 제7조(준용) <u>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u> <u><신설></u> 제8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잉여금 처리) <u>특별회계</u>----- -----. 제7조(운용 및 관리) <u>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u>----- <u>규정한 것</u>----- -- <u>따른다.</u> 제8조(준속기한) <u>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9조(시행규칙) ----- - <u>필요</u>----- -----.
---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

- 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소관 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박 영 희
	담 당 자	박 명 희 (480-6252)